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2025. 9. 11.

발 의 자: 문진석 의원

찬 성 자:29인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김건희·명태균·세칭 건진법사 등이 연루된 수많은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별검사팀의 수사역량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토대로 하되, 수사역량 확충과 기간 연장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법리적 정합성을 보다 높이고 자 함(안 제9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7항 전단 중 "따른"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따라"로, "배 당받은"을 "인계받은"으로,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를 "신속하게"로 한 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	제2조(특별검사의 수	제2조(특별검사의 수
사대상 등) ① ・	사대상 등) ① ·	사대상 등)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2) (생 탁) <u><신 설></u>	(2) (연행과 같음) (3) 이 법에서 "관련 범죄행위"란 다면 범죄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전 기인멸죄, 위증 죄, 허위감정통역 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오. 제2조제1항 각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인의 원인 또는	(2)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한 「형법」 제1 29조부터 제133 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 련하여 1개의 목 적을 위하여 동 시 또는 수단결 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15호까지 의 각 사건에 관 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를 상대로 고소 • 고발이 제기된 범죄

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생 략)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제6조(특별검사의 직 제6조(특별검사의 직 제6조(특별검사의 직 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있어서 필요한 경		
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경찰청 등 관		
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		
견근무와 이에 관		
련되는 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 다		
만, 파견검사의 수	<u>70명</u>	
는 <u>40명</u> , 파견검사		
를 제외한 파견공		
무원의 수는 <u>80명</u>	<u>140명</u>	
이내로 한다.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⑥ · ⑦ (개정안과
	같음)	같음)
⑧ 「형사소송법」,	8	⑧ (개정안과 같음)
「검찰청법」(제4조		
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u></u> 「군사법원	
그 밖의 법령 중	법」, 「고위공직자	
검사와 <u>군검사의</u>	범죄수사처 설치	
권한에 관한 규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은 이 법에 반하지	률_과	
아니하는 한 특별	군검사 및 수	

검사의 경우에 준	<u> 사처검사의</u>	
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제7조(특별검사보와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	특별수사관 등) ①	<u>특별수사관 등</u>) ①
별검사는 「법원조		(개정안과 같음)
직법」 제42조제1		
항 각 호의 직에 7		
년 이상 있던 사람		
(「법원조직법」 제		
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		
의 직위에 재직하		
였던 사람은 그 재		
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u>8명</u> 의 특별	<u>12명</u>	
검사보후보자를 선		
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		
청을 받은 날로부		
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u>4명</u>		
을 특별검사보로	<u>6명</u>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보 임명을 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제3 조제5항을 준용한 다. ② 특별검사보는 (2) -----특별검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 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 거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 관 및 관계 기관으 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워에 대한 지 위·감독을 한다. -----. 파견검사 는 특별검사나 특 <후단 신설> 별검사보의 지휘• 감독에 따라 특별 검사와 특별검사보 의 재정 없이 법정 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개정안과

③ ~ ⑥ (현행과 |

③ ~ ⑥ (생 략)

	같음)	같음)
제9조(수사기간 등) ① · ② (생 략)	제9조(수사기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사기간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특별검사는 제2 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3	③ (개정안과 같음)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u>1</u> <u>회에 한정하여</u> 수 사기간을 <u>30일</u> 연	<u>2</u> <u>회에 한하여</u> <u>각 30일</u>	
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특별검사는 수 사기간 이내에 수 사를 완료하지 못	⑥	⑥ (개정안과 같음)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 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 할 지방검찰청 검 사장에게 인계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내역 등에 대한 보 고에 관하여는 제1 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 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u>다른 법률</u>에 우 선하여 이 법에 따 라 사건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비용지출 및 활동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 제16조 에 따른 국가수사 본부장에게-----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u>인계받은</u> 관<u>할</u>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

-----배당받은 국| 가수사본부의 사법| 경찰관은 특별검사 의 지휘 하에--------완료하고, 범 죄의 혐의가 있다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 법경찰관은 신속하

지를 담당한다. 이 제11조를 준용한다.

<신 설>

된 사건의 공소유 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경우 사건의 처리 규정에 따라 지체 보고에 관하여는 없이 관할 지방검 <u>찰청</u>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⑧ 제7항에 따라 ⑧ (개정안과 같음) 사건을 송치받은 <u>관할</u>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 는 제11조를 준용 한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법에서 "관련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 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 5.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각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제기된

범죄

제6조제5항 단서 중 "40명"을 "70명"으로, "80명"을 "1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군사법원법」과"를 "「군사법원법」,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로, "군검사의"를 "군검 사 및 수사처검사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전단 중 "8명"을 "10명"으로, "4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하여"로, "30일"을 "각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따라"를 "따른"으로,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특별검사의 지휘 하에"로,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 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

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및 특별검 사보와 특별수사관, 수사기간 등 그 내용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특별검사보 추가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전단의 개정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 제4조(형벌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이 법에서 "관련 범죄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
	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u>죄</u>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
	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u>범죄</u>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
	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
	<u>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u>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
	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
	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
	까지의 각 사건에 관하여 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저한 등) ① ~ ④ (생 략)

-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수는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 이내로 한다.
- ⑥ ⑦ (생 략)
-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u>군검사의</u> 권한에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u>특별수사관</u>) 제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
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이 제기된 범죄
세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70명</u>
<u>140명</u>
<u>.</u>
⑥ · ⑦ (현행과 같음)
8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과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u>.</u>
ll7조(특별검사보와 <u>특별수사관</u>
<u>등</u>)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 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 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u>8명</u>의 특별 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 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u>4명</u>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 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 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후단 신설>

<u>12명</u>
<u>6명</u>
②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
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
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 ③ ~ ⑥ (생 략) 제9조(수사기간 등) ① · ② (생 략)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하다.
 - ④ ⑤ (생 략)
 -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u> </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수사기간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2회에 한
<u>하여각 30일</u>
④ · ⑤ (현행과 같음)
6
<u>다른 법률에 우선하</u>
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
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은-----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 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 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 용한다.

<신 설>

(생 략) <신 설>

<신 설>

(7)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 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 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 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 용한다.

-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②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 ③ 「법원조직법」 제57조 단 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 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 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

<신 <u>설></u>

<신 설>

<신 설>

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 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 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 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 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 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 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 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 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 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 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 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 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 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 제2조(유효기간)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 한 때
-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 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 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 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 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 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u>제9조제7항</u> 은 관할 지방	제9조제8항
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	
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	
다.	